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1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운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2.
3. 회부연월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심신 장애”를 사유로 한 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한 6개 법률 조문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하고 있음.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학병원장) ① ~ ⑤ (생략)	제14조(대학병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⑥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치과병원장) ① ~ ⑤ (생략)	제12조(치과병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략)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u> ⑦ (생략)	행과 같음) ⑥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⑦ (현행과 같음)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생략) 2. <u>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u>	제29조(임원의 해임) ----- ----- -----. 1. (현행과 같음)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5. (생략) ⑦ (생략)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0조(대학병원장) ① ~ ⑤ (생략)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제10조(대학병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현행	개정안
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⑦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⑦ (현행과 같음)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0조(치과병원장) ① ~ ⑤ (생략)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⑦ (생략)	제10조(치과병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⑦ (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를 때,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의미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함.

심신장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에 대해 판례¹⁾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음.

개정안은 위원 등의 해촉 또는 해임 사유에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촉 또는 해임 사유에 장애라는 표현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임.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해임 사유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해임 사유 판단에 객관성을 더하고 있음. 기존의 판례는 심신장애로 인한 해임 등에 대해서 심신 장애 여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부 판단에 있어 법관의 주관적 해석을 인정²⁾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할 경우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문서³⁾인바, 해임 또는 해촉 당사자가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상태를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임용권자가 객관적 자료인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해임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질환은 질병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내부적 원인에 의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를 의미함. 이를 고려했을 때,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신체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인 부상까지 해촉 또는 해임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신체 기능의 이상을 설명할 때 부상과 질병을 함께 규정⁴⁾하고 있음.

2)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360)

3)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략>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

셋째, 현행 규정은 해촉 또는 해임사유를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범위를 좁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심신장애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개선에는 동의하나, 의료법에서도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대학교병원은 ‘심신장애’는 형법 등 많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현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령의 용어 사용례 전반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가 필요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의해 사법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함께 용어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현행법은 장애인의 경우 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표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면 의사의 진단·소견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진단 등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임명권자의 해임 권한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